

시 민

문서번호	요금과-5171
결재일자	2023. 3. 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요금과장	동부수도사업소장
최경속	서미희	03/06 정한호
협조	요금관리1팀장	김현주
	요금관리2팀장	윤준수

# 「수도사업특별회계」 2023년도 세입징수계획

2023. 3

동부수도사업소  
요금과

# 「수도사업특별회계」

## 2023년 도 세입징수계획

우리 사업소의 세입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급수사용료의 정확한 조정과 적극적인 체납징수 등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 '23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자 함

### I 최근 3년간 세입 현황

#### 연도별 징수 실적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2020 년	2021 년	2022 년
목 표 액 (A)		102,151	96,887	103,722
징 수 액 (B)		92,768	91,724	102,615
실적	목표비율	97.50	97.17	97.28
	달성률(B/A)	90.82	94.67	98.93
	증·감	감 6.68	감 2.5	증 1.65

○ 2022년 징수액이 급수수익이 전년대비 14,843백만원 (1.65%) 증가

- 급수수익 증가과목 : 가정용 7,489백만원 증, 공공용 3,262백만원 증, 일반용 4,261백만원 증

## II

# 추진 목표

- 징수결정액 : 133,866백만원
- 징수목표액 : 130,878백만원
- 징 수 율 : 97.77%(현년도 97.95 / 과년도 87.22%)
- 세목별 징수목표

(단위 : 백만원,%)

세 입 과 목	2023년도 계획			2022년도 실적			전년 실적대비 증·감		
	징수결정액 (A)	징수목표액 (B)	징수율 (B/A)	징수결정액 (C)	징수액 (D)	징수율 (D/C)	징수액 (B-D)	증감율 (B/A)-(D/C)	
총 계	133,866	130,877	97.77	105,024	102,615	97.71	28,262	0.06	
현 년 도	소 계	131,574	128,878	97.95	103,171	101,038	97.93	27,840	0.02
	급 수 수 익	123,630	120,970	97.85	94,495	94,365	97.79	26,605	0.06
	급수공사비	7,721	7,721	100	6,431	6,431	100	1,290	0
	변상위약금	150	122	81.57	194	192	98.97	-70	-17.4
	기타(잡수익외)	73	65	89.00	51	50	98	15	-9
과 년 도	소 계	2,292	1,999	87.22	1,853	1,577	85.11	422	2.11
	수용가미수금	2,247	1986	88.38	1,763	1,522	86.33	464	2.05
	기타미수금	45	13	29.42	90	55	61.11	-42	-31.69

### III

## 추진 방향

#### 정확한 요금 조정과 심사

- 검침일 준수, 착오검침, 사용량 정산, 증감수전 원인규명 등 : 매월

####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 강화

- 특별 체납 정리기간 운영 총4회(매분기별 1회)
- 고액·장기체납자 집중 독려 및 행정처분 확행
  - 현장 독려 및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으로 채권확보 철저
-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(별도 계획 수립)

#### 조례위반 단속 강화

- 조례위반사항 적발로 은닉세원 증대
  - 점검대상 :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복합수전건물(일반용+옥탕용, 일반용+가정용)
  - 점검시기 : 건축통보시 현장확인 및 사용량 격감수전 수시확인
  - 추진사항 : 적발사항 엄중 처분과 위반사항 사전안내로 부정급수 차단

#### 직무교육 실시

### IV

## 세부추진계획

#### 정확한 요금 조정과 심사

- 중점추진 사항
  - 업종적용 및 수요가 변동사항 등 확인 철저
  - 격증, 격감 등(30% 증감수전)사용량 수전 원인파악(매월)
    - 검침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전 현장 조사
  - 비정상계량기 신속한 교체로 요금 탈루방지
  - 인정조정 수전 원인파악 후 해소방안 처리
    - 4회 이상 인정조정수전 원인파악 및 해소방안 계획수립(상·하반기)

- 재개발 지역 급수전 철저 관리
  - 재개발조합과 협조체제 유지로 폐전처리 효율증대 및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

○ 시설관리공단(동부수도 관리소) 준수사항 점검·확인 실시

- 정례 검침일 준수(부득이한 경우 ±2일 이내 점검, 1인 1분구 점검 원칙)
- 허위검침, 검침누락, 인정조정 적정여부 확인
- 신개전, 폐전, 이상수도계량기 처리 적정여부 등
- 사용량 격증, 격감수전 원인과약 여부(PDA 기록)
- 고지서 송달기간 준수 및 미수령 민원발생시 즉시 재송달
- 검침시 고액납부 고객에 대한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사전안내

□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 강화

○ 현년도 징수를 제고

- 고액 납부 고객에 대한 직접송달(검침원 고지서 송달시 수령자 확인 기록 등)
- 수시분(폐전, 과태료, 원인자, 손괴자, 임대료, 잡수익 등)의 납기마감일 안내로 납기내 징수 강화

○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

- 적기·적소에 고지서 송달하도록 검침원 관리
- 자가검침, 수도요금바로알람서비스 및 자동납부, 가상계좌 납부 등 홍보

○ 체납특별 정리기간 설정·운영 : 년 4회(3, 6, 9, 12월)

- 「체납징수반」 특별편성 운영
  - ▶ 정수처분 예고서 일제 송부(매월 고지서송달 시)
    - 상수 20만원이상 체납으로서 4회이상 및 고액체납자(상수 100만원이상)
  - ▶ 매월 징수방안 토론(사례연구 위주) 실시, 체납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
- 담당자별 목표배분 및 월간체납징수실적 관리
  - 성과를 거둔 직원의 사기를 부양하고 성과가 부족한 직원의 분발을 촉구
- 적기 행정처분 등을 통한 채권확보
  - 상시 체납독려 철저
  - 고액체납시 즉시 정수처분, 재산압류
  -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고 무재산시 결손처분

- 옥탕용 체납자 특별관리
  - 명의위장사업자 등 요금탈루 개연성이 있는 옥탕용 모든 체납자 특별관리
  - 매월 납부상태 확인, 적기 행정처분, 조치사항 매월 본부보고
- 체납사실(건물)소유자 통보 추진
  - 사용자 등의 연대책임 확인 및 소유자의 간접독려로 체납금 납부유도
    - ☞ 근거 :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3조제2항 단서조항

「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」

- 전산 체납독려부 관리
  - 50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반드시 Arisu인포시스템에 독려내역을 입력하여 담당자 외 요금과 전직원이 확인하여 전화응대 가능하도록 전산 관리
- 조례위반 단속강화
- 중점추진 사항
  - 조례위반사항 사전안내 홍보 실시
    - 수도검침시 검침원의 안내문 배부를 통한 조례위반 사전안내
    - 신·개축 건물 공사현장 및 재건축·재개발 현장 대상으로 검침시 조례위반 예방 안내문 공사관계자에게 배부 또는 부착
    - 자치구별 건축관련부서로 안내문 발송하여 재건축 철거 신고시 협조
  - 다량 급수처 관리
    - 월 평균 300m<sup>3</sup>이상수전 (가정용, 공공용중 학교 및 공공기관 제외)중점 관리
    - 조정량 분석관리명단 작성·비치 및 전산관리
    - 대형·복합수전 등 혼용가능 건물 중점 단속
    -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사유분석 조치
      - ※ 특히 유리파손, 동파, 몸통파손, 역회전, 역설치, 지침비정상, 열 손상으로 인한 계량기 교체업소는 교체 후 정례검침일 이후에 관리검침 실시
    - 계량기 주변(볼트핀, 설치봉인 등) 작업흔적여부 중점점검
  - 과태료 처분수전 사후관리
  - 상수도 시설물 손괴자 원인자 부담금 징수
    - 공사부서(급수운영과, 시설관리과)의 협조하에 현장에서 손괴원인행위자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확보하여 100% 징수

## 직무교육 실시

- 교육회수 : 월 1회 이상
- 교관 : 과장(요금관리팀장)
- 교육내용
  - 상수도요금 과징업무 관련규정 및 처리요령
  - 조례위반 단속요령
  - 기타 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과징관련 추진업무
- 직원별·지역별 과징목표액 및 징수실적을 배분하여 담당자 책임감부여 및 실적관리